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0. 24 선고 2024가단12964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24. 9. 26.

판결 선고2024. 10. 24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들과 C 사이에 2020. 9. 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들은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. 9. 9. 접수 제200892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A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B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판사김철환

별지